

## 2013년 2월 23일 경찰간부후보생시험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해설 : 송 광 호

### ◆ 기출문제 분석표 ◆

| 구분 | 전체문제수<br>(20) | 목차         | 세부문제수                             | 비고<br>(전체 박스형개수문제 14문제)           | 특징                                                                                                                                                                                                                                                                                                                                              |
|----|---------------|------------|-----------------------------------|-----------------------------------|-------------------------------------------------------------------------------------------------------------------------------------------------------------------------------------------------------------------------------------------------------------------------------------------------------------------------------------------------|
| 총론 | 16            | 경찰학서론      | (1번, 2번)                          | 2번 : 박스형개수문제                      | (1) 예전에는 시험문제가 교재의 목차 순이었으나 이번 시험문제는 교재의 목차 순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br>(2) 박스형 개수문제가 예년에는 20문제였으나 올해는 14문제로 조금 줄었습니다.<br>(3) 비교경찰론 문제는 없다.<br>(4) 한국경찰사 문제가 2문제로 줄었다.<br>(5) 경찰수사론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다.<br>(6) 일반적인 경찰학개론의 난이도보다 조금 깊은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br>(7) 총론보다 각론의 비중이 더 높다.<br>(8) 행정법 5문제와 관라통제론 5문제로 비중이 같다.<br>(9) 경찰공제회의 실무문제집에서 약간 변형되어 출제된 문제가 많다. |
|    |               | 경찰철학론      | (3번, 8번)                          | 3번, 8번 : 박스형개수문제                  |                                                                                                                                                                                                                                                                                                                                                 |
|    |               | 한국경찰사      | (5번, 6번)                          |                                   |                                                                                                                                                                                                                                                                                                                                                 |
|    |               | 비교경찰론      | 0                                 |                                   |                                                                                                                                                                                                                                                                                                                                                 |
|    |               | 경찰행정법      | 조직법(9번, 15번)<br>작용법(4번, 10번, 11번) | 4번, 9번 : 박스형개수문제                  |                                                                                                                                                                                                                                                                                                                                                 |
|    |               | 경찰관리론, 통제론 | (7번, 12번, 13번, 14번, 16번)          | 7번, 12번, 14번 : 박스형개수문제            |                                                                                                                                                                                                                                                                                                                                                 |
| 각론 | 24            | 생활안전론      | (17번, 19번, 23번, 26번)              |                                   |                                                                                                                                                                                                                                                                                                                                                 |
|    |               | 경찰경비론      | (18번, 24번, 25번, 27번)              | 25번 : 박스형개수문제                     |                                                                                                                                                                                                                                                                                                                                                 |
|    |               | 경찰교통론      | (28번, 29번, 30번)                   | 30번 : 박스형개수문제                     |                                                                                                                                                                                                                                                                                                                                                 |
|    |               | 경찰정보론      | (31번, 33번, 39번)                   | 33번, 39번 : 박스형개수문제                |                                                                                                                                                                                                                                                                                                                                                 |
|    |               | 경찰보안론      | (34번, 35번, 36번)                   | 34번, 35번 : 박스형개수문제<br>36번 : 박스형문제 |                                                                                                                                                                                                                                                                                                                                                 |
|    |               | 경찰외사론      | (22번, 32번, 38번)                   |                                   |                                                                                                                                                                                                                                                                                                                                                 |
|    |               | 경찰수사론      | (20번, 21번, 37번)                   |                                   |                                                                                                                                                                                                                                                                                                                                                 |
|    |               | 기타         | (40번)                             | 40번 : 경찰홍보                        |                                                                                                                                                                                                                                                                                                                                                 |

## 01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번)

- ①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한다.
- ②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 ③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경찰이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④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정답 ③

- 해설 ① (틀림) 18세기 경찰국가시대 의(↔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경찰은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한다.
- ② (틀림) 1794년 프로이센 일반관트법(↔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 ④ (틀림) 프로이센 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축소(↔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 02 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해설 ② “㉠, ㉡” 2개는 틀리고, “㉢, ㉣” 2개는 옳음.
- ㉠ (틀림) 임의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 10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6항}.
- ㉢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2항
- ㉣ (틀림)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2항}.
- ㉤ (옳음)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행정경찰작용설, ㉢행정경찰작용·사범경찰작용 병존설, ㉣준사범경찰작용설 등 다양한 학설로 나뉘어져 있다.

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전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 ② 홍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05 부족국가 시대부터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까지의 시대상 및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5번)

- ① 부족국가 시대 동예에서는 각 읍락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責禍制度)가 전해진다.
- ②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신분관제로서 14관등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육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으며, 반역죄·절도죄·살인행적죄(殺人行怯罪)·전쟁에서 패하거나 항복한 죄·가축살상죄 등이 전해진다.
- ③ 통일신라시대에는 병부, 사정부, 이방부 등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이방부는 좌이방부, 우이방부로 나뉘어







㉮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 (옳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항

조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 이유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0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9번)

- ㉠ 직권유직 사유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인 경우이다.
- ㉡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 ㉢ 직위해제된 자가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된다.
-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 또는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④  
해설 ④

④ “ㄱ, ㄴ, ㄷ” 3개는 틀리고, “ㄹ” 1개는 옳음.

㉠ (틀림) 직권휴직 사유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이다.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인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조(휴직) 제1항,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2호].

㉔ (틀림)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8할{↔ 7할(x)}을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㉔ (틀립)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2항).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12.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사·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8〉

###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22>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3.28>
-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본조신설 1965.10.20]

[제7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04.3.11>]

#### 조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총경: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③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 전에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 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제근무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 ⑦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



에 포함한다.

⑧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3.1.9]

조문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 1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0번)

- ①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는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이다.
- ②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일반적 수권조항이라는 것에 판례와 학설이 상호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제2조에서는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과 더불어 대테러작전도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② (옳음) 독일은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경직법 제2조 제6호가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하여 긍정설(김남진, 유지태), 입법필요설(김동희(2002년 이후), 홍정선, 김철용), 부정설(김동희(2002년 이전))로 나뉘어 있으며, 긍정설에 따른 판례(대판 1986. 1. 28, 85도2448)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③ (틀림) 제2조에서는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과 더불어 대테러작전을 직접적으로 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3호]. 여기서 '경비'란 인명과 재산을 인위적·자연적 위해로부터 특정한 지역, 국가시설 및 중요시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요인경호'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책에 있거나 기밀 등을 알고 있는 자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대간첩작전'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활동을 방지·억제하고 간첩활동을 하는 자를 체포하는 활동을 말한다(장영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56쪽).

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8.4>

-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11 다음 중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0번)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나 분사기의 사용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 ③ 즉시강제는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등 법률상 한계를 갖고 있다.
- ④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대인적{↔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③ (틀림) 즉시강제는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소극성 등 조리상{↔ 법률상(×)} 한계를 갖고 있다.

④ (틀림)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절충설(원칙 : 필요, 예외 : 불필요){↔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정리 **경직법상 즉시강제**

|                 |                                                                                     |
|-----------------|-------------------------------------------------------------------------------------|
| 대인적 즉시강제        |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제4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조치(제6조), 경찰장바·경찰장구·분사기·무기의 사용(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4) |
| 대물적 즉시강제        | 무가·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제4조)                                                           |
| 대가택적 즉시강제       |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출입 및 대간첩 지역 내 검색(제7조)                                                  |
| 대인·대물·대가택적 즉시강제 | 위험발생의 방지                                                                            |
| 임의적 사실행위        | 경찰상직무수행을 위한 사실확인행위, 경찰관직무수행을 위한 출석요구                                                |

정리 **경찰상 즉시강제의 한계**

|        |           |                                                                                                                                                                                                                                                                                                                                                                                                                               |
|--------|-----------|-------------------------------------------------------------------------------------------------------------------------------------------------------------------------------------------------------------------------------------------------------------------------------------------------------------------------------------------------------------------------------------------------------------------------------|
| 실체적 한계 | 법규상 한계    | 즉시강제는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또한 법규에 적합하여야 함                                                                                                                                                                                                                                                                                                                                                                                          |
|        | 조리상 한계    | (1) 급박성 : 경찰상 장애의 발생이 현존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장애의 발생이 확실할 것 → 미국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법리’에 상당한 것<br>→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와 그 상질상 의무를 부과해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br>(2) 보충성 : 다른 수단으로는 당해 경찰목적 달성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위해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br>(3) 비례성 : 수단은 경찰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일 것 → 경미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상 즉시강제는 할 수 없음<br>(4) 소극성 : 적극적인 경찰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발동될 수 없음 |
| 절차적 한계 | 문제의 소재    | 경찰상 즉시강제에도 헌법상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        | 절충설 (다수설) | (1) 원칙 : 헌법상 영장제도는 권력의 억제와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찰상 즉시강제에도 기본적으로 적용<br>(2) 예외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                                                                                                                                                                                                                                                                                    |

**12** 다음 중 **엽관주의의 단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2번)

|                                     |
|-------------------------------------|
| ㉠ 인사행정의 소극화·형식화·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다.      |
| ㉡ 행정의 계속성·일관성·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
| ㉢ 국민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 ㉣ 인사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인사의 공정성이 약하게 된다. |
| ㉤ 인사부패가 연관되기 쉽다.                    |
| ㉥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 ②

해설 ② **엽관주의의 단점**은 “㉠, ㉡, ㉤” 3개이고, **실적주의의 단점**은 “㉢, ㉣, ㉥” 3개이다.

정리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      | 엽관주의                                                   | 실적주의                                                                   |
|------|--------------------------------------------------------|------------------------------------------------------------------------|
| 개 념  | 공직임용에 있어서 충성심, 당파성, 학연, 혈연, 지연, 정치적 영향력 등에 기준을 두는 인사제도 |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공직임용과 승진을 시키는 인사제도                                  |
| 발달과정 | 미국의 자유민주정치발전 과정에서 도입                                   | (1)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br>(2)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 |

|     |                                                                                                                                                                |                                                                                                                                                                                                                |
|-----|----------------------------------------------------------------------------------------------------------------------------------------------------------------|----------------------------------------------------------------------------------------------------------------------------------------------------------------------------------------------------------------|
| 특 징 | (1) 민주국가의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정당활동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공직에 임명하는 제도<br>→ 정당활동과 공직임명이 직결된 인사충원<br>(2) 행정을 단순하게 보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봄 (행정의 전문성을 간과함).                   | (1) 개방형 임용 :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음<br>(2) 정치적 중립성, 독립적 중앙인사기관의 설치<br>(3) 공무원의 신분보장 : 공무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br>(4) 공개경쟁채용시험 : 직무수행능력, 자격 및 성적을 기준으로 채용                                |
| 장 점 | (1)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br>(2)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br>(3) 공직경질을 통한 관료특권화나 관료집체 방지<br>(4) 민주통제 강화, 책임행정의 구현, 행정의 민주성·대응성 향상<br>(5) 정치적 변혁이나 중요한 정책변동에 대응하는 데 유리함   | (1) 인사행정의 객관성·공정성과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향상<br>(2)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으로 사회적 평등 실현<br>(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br>(4) 신분보장을 통한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확보와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공무원의 사기양양<br>(5) 과학적·합리적 인사관리                               |
| 단 점 | (1) 행정의 계속성·안정성 저해<br>(2) 인사행정의 정실화에 따른 행정능률의 저하<br>(3) 불필요한 관직의 증설로 예산장비와 국민의 부담 가중 우려<br>(4) 부적격자의 임명에 따른 부패·낭비의 조장과 행정질서의 문란초래<br>(5) 신분보장 마찰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 (1) 지나친 실적주의의 강조는 중요한 정책변동기에 그 정책을 융통성 있게 지지하고 집행할 공무원의 탄력적인 확보를 어렵게 함 → 인사행정의 형식화(경직성·비용통성)와 소극성<br>(2) 대응성과 책임성의 저해 : 관료특권화, 민주통제의 곤란, 정당정치의 저해<br>(3) 집권성 : 인사권을 중앙인사기관에 지나치게 집중<br>(4) 비인간화 : 인간적 요인의 과소평가 |
| 한국  | (1) 원칙 : 실적주의<br>(2) 가미 : 엽관주의                                                                                                                                 |                                                                                                                                                                                                                |

### 13 공직의 분류방식 중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3번)

- ① 190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 ②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조직의 전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
- ③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제시가 가능하다.
- ④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중간계급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인식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한다.

정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 계급제                                                  | 직위분류제                                                                                                 |
|------|------------------------------------------------------|-------------------------------------------------------------------------------------------------------|
| 개 념  | 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각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수평적으로 분류하는 제도                                 |
| 분류기준 | 인간중심의 분류                                             | 직무중심의 분류                                                                                              |
| 채택국가 | (1) 직무가 단순한 농업사회에 발달<br>(2)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 (1) 직무가 다양하게 분화된 산업사회에서 발달<br>(2) 190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br>(3) 관료제의 전통이 별로 없는 미국과 그 영향을 받은 캐나다, 필리핀 등 |
| 충원방식 | 폐쇄형 → 계급의 수가 작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함                         | 개방형                                                                                                   |
| 인사배치 | 신축적·융통적                                              | 비신축적·비용통적                                                                                             |
| 신분보장 | 강함 → 폐쇄형 운영에 따른 폭넓은 순환보직을 통해 신분                      | 약함 → 직위가 없어지면 직위자체가 폐지됨                                                                               |





|  |                                                                                     |
|--|-------------------------------------------------------------------------------------|
|  | (2)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 재정통제에 역점을 둔 전년도 답습방식의 1년주의 현실지향적 예산이므로 장기적 계획과의 연계가 곤란            |
|  | (3) 지출목적의 불분명하여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고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                                        |
|  | (4)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 부족 : 품목별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에 치중하여 정부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는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함 |
|  | (5)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임                    |

## 정리 성과주의 예산제도

|     |                                                                                                                                                                                                                                                    |
|-----|----------------------------------------------------------------------------------------------------------------------------------------------------------------------------------------------------------------------------------------------------|
| 개 념 | 정부의 기능·활동 및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제도                                                                                                                                                                                                                  |
| 특 징 | (1)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br>(2)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
| 장 점 | (1) 국민이 경찰(정부) 활동을 이해하기 용이하고, 경찰 PR에 기여함<br>(2) 예산편성시 자원배분합리화<br>(3)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되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제고됨<br>(4) 의회의 예산심의가 간편하고 효율적<br>(5)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함<br>(6) 업무의 계량화가 쉬운 작은 규모의 조직에 적용 용이<br>(7) 해당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 단 점 | (1) 업무측정단위 선정곤란 : 정부사업은 수량적으로 표시곤란, 최종산물의 측정단위 선정 곤란<br>(2) 단위원가계산의 곤란성 : 단위원가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려면, 고도의 전문적 회계지식과 기술이 필요함.<br>(3)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적용 어려움<br>(4)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곤란<br>(5) 회계책임의 불분명 및 철저한 공급관리 곤란<br>(6) 총괄계정으로는 부적합(성과별 분류의 대상은 部局 수준에 그침) |

## 15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5번)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유고시 비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과 중요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한 설치된 기구이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장) 제3항].

② (옳음) 「경찰법」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항

③ (옳음) 「경찰법」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항

조문 「경찰법」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조문 「경찰위원회규정」

### 제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16 다음 중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6번)

- ① 민주적 통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방법으로 각국의 행정체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조직이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제도와 자치경찰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 ② 경찰활동이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고도의 재량행위지만, 오늘날에는 재량의 일탈과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실체적 심사뿐만 아니라 재량의 절차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③ 오늘날에는 행정청의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기 전에 국민이 절차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 ④ 사법통제는 사후통제이기 때문에 행정결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며, 위법성 여부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며 행정의 비능률성이나 부작위, 부당한 재량행위는 다룰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조직이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나 경찰책임자의 선거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7 범죄피해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학자들의 견해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7번)

- ① Garofalo는 범죄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 ② H. Von Hentig는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계층과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인성과의 관계를 통해 피해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범죄자와 피해자'를 저술하였다.
- ③ B. Mendelshon은 1940년대 강간피해자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 ④ B. Mendelshon은 '범죄피해자 유형론'에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라고 하였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B. Mendelshon은 '범죄피해자 유형론'에서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는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x)}'라고 하였다.

정리 피해자를 연구대상으로 한 현대적 범죄학 : 범죄피해자학(경찰실무종합, 경찰공제회)

|               |                                                                                         |
|---------------|-----------------------------------------------------------------------------------------|
| Garofalo      | 범죄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                                                 |
| B. Mendelshon | 1940년대 강간피해자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 유형론'을 제시                                                     |
| H. Von Hentig |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계층과 범죄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는 인성과의 관계를 통해 피해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한 '범죄자와 피해자'를 저술 |

정리 Mendelshon의 범죄피해자 유형론(경찰실무종합, 경찰공제회)

| 피해자의 유형                | 내 용                        |
|------------------------|----------------------------|
| 완전히 책임 없는 피해자          | 영아살해에 있어서의 영아              |
| 책임이 조금 있는 피해자          | 무지에 의한 낙태여성                |
|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
| 가해자보다 더 책임이 있는 피해자     |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            |
| 가장 책임이 높은 피해자          | 공격을 가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가해적 피해자 |

18 재난발생시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8번)

- ① 경비경찰은 비상출동로를 사전지정하고 이에 대한 유지를 담당한다.  
②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되도록 단일화한다.  
③ 경찰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인원과 장비를 지원한다.  
④ 제1통제선은 소방, 제2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정답  
해설  
정리

①  
① (틀림) 교통경찰(↔ 경비경찰(×))은 비상출동로를 사전지정하고 이에 대한 유지를 담당한다.

현장지휘본부의 기능별 임무

|      |                                                                      |                                                   |
|------|----------------------------------------------------------------------|---------------------------------------------------|
| 홍보   | (1) 관련정보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br>(3) 교통통제 등 국민협조사항 홍보                         | (2) 경찰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각각 홍보                            |
| 경비   | (1) 현장지휘본부 설치·운영<br>(3) 동원경력·장비의 확보 및 운영<br>(5) 현장의 제반 작업장소에 대한 경비활동 | (2) 경찰통제선 설치<br>(4) 비상소집<br>(6) 유관기관 합동본부연락관 파견업무 |
| 교통   | (1) 비상출동로 사전지정 및 상황발생시 활용<br>(3) 현장주변에 대한 교통통제                       | (2) 비상출동로 구간별 교통통제·관리<br>(4) 외곽지역 교통혼잡 예상지역 관리    |
| 생활안전 | (1) 현장주변 방범순찰<br>(3) 대피한 건물, 사상자 소지품의 약탈 방지                          | (2) 유류품 접수 및 인계                                   |
| 수사   | (1) 피해자의 신원확인(감정)<br>(3) 목격자·증거의 확보                                  | (2) 사고원인 및 범죄관련 여부 수사<br>(4) 기타 수사상 필요한 업무수행      |
| 정보   | (1) 사태관련 유용한 정보의 수집·보고<br>(3) 각종 유언비어의 차단                            | (2) 피해자 가족 등 동향 파악                                |
| 통신   | (1) 현장지휘본부에 전화·무전기 등 통신시설 설치<br>(2) 현장에 투입된 모든 임무부서에 통신설비 제공         |                                                   |
| 장비   | (1) 현장지휘차량 확보·제공<br>(3) 인명구조 기타 사태수습에 필요한 장비의 효율적 관리                 | (2) 출입통제선 설치물 및 수송차량 제공                           |

정리

경찰통제선

|      |                                                                                                                                                                                                                            |
|------|----------------------------------------------------------------------------------------------------------------------------------------------------------------------------------------------------------------------------|
| 개념   |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경찰통제선                                                                                                                                                                                       |
| 설치목적 | (1) 2차 사고로부터 주민보호<br>(2) 구조활동 방해요소 제거<br>(3) 사고수습활동 공간의 확보                                                                                                                                                                 |
| 운영   | 통제선은 보통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여 운영함<br>(1) 제1통제선 : 소방담당(통제관 : 소방서장, 소방본부장)<br>(2) 제2통제선 : 경찰담당(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
| 설치범위 | 설치범위는 구조 및 복구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넓게 정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축소·확대하도록 함                                                                                                                                                           |
| 출입통제 | (1) 통제구역 안으로는 구조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인원·장비 외에는 출입을 통제할 것 → 단,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적당한 표시를 하여 출입을 허용함<br>(2) 다수의 군중이 모인 혼란한 상황에서는 바리케이트를 활용하며, 바리케이트 운반차량을 사전에 지정, 필요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br>(3) 바리케이트 도착 전까지 로프나 반사테이프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출입구  | 입구는 1개를 원칙으로 하며(필요시 반대편에 1개를 추가), 입구에는 정복경찰을 배치, 출입통제 근무를 실시하도록 할 것                                                                                                                                                        |

19 다음 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19번)

- ①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방지 의무가 있다.
- ②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로 업무를 평가한다.
- ③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한다.
- ④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효율성을 측정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로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를 측정한다.  
정리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 구 분      | 전통적 경찰활동                                                  | 지역사회 경찰활동                           |
|----------|-----------------------------------------------------------|-------------------------------------|
| 개 념      | 경찰이 법집행의 책임을 갖는 유일한 정부기관                                  |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범죄방지의 의무 요구             |
| 역 할      | 범죄해결                                                      | 범죄해결보다 포괄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법              |
| 업무평가     | 범인검거율                                                     |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                    |
| 업무의 순위   | 범죄와 폭력의 퇴치                                                | 범죄와 폭력의 퇴치 및 지역사회를 문란케 하는 요인의 해결    |
| 대 상      | 범죄사건(범죄발생 이후의 활동)                                         |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범죄발생 이전의 활동)           |
| 효율성      |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                      |
| 강조점      | (1) 집중화된 조직구조<br>(2) 법과 규범에 의한 규제<br>(3)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강조 |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 |
| 타기관과의 관계 | 갈등관계                                                      | 원활한 협조관계                            |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20번)

- ① 일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불특정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라는 성격을 가진다.
- ② 단체 구성원이 선·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서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 ③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 ④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 ① (틀림)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x)}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21** 수법범죄는 범죄수법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다음 중 수법원지를 작성하는 수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21번)

- ① 절도                                                        ② 사기  
③ 방화                                                      ④ 도박
- 정답 ④
- 해설 ④ (틀림) 경찰서장(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한 사건)

조문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수법원지의 작성)

- ① 경찰서장(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별표1 "수법·수배·피해통보 전 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법원지 1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있다.
1. 강도
2. 절도
3. 사기
4. 위조·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편, 인지, 문서, 인장)
5. 약취·유인
6. 공갈
7. 방화
8. 강간
9. 제1호 내지 제8호중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
10. 장물
- ② 제1항의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수법원지는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수사 주무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후 수법원지 작성누락 여부 및 작성된 수법원지 내용의 옳거나 기재누락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교정하고 작성 책임자인을 직접 날인하여야 한다.

**22** 국제형사경찰기수(인터폴)의 국제수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22번)

- ①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는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발행된다.
- ② 국제정보조치수배서(Blue Notice)는 수배자의 신원 및 소재확인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③ 녹색수배서(Green Notice)는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다.
- ④ 흑색수배서(Black Notice)는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정리 **국제수배서의 종류**

|                     |                                  |                                                                                                                                                                                                                    |
|---------------------|----------------------------------|--------------------------------------------------------------------------------------------------------------------------------------------------------------------------------------------------------------------|
| 적색수배서               | Red Notice :<br>Form 1           | (1) 국제체포수배서<br>(2)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함.<br>(3)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찰이 피수배자를 발견할 때 긴급인도 구속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정하는 구금의 청구 정식인도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됨.<br>(4) 적색 수배서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은 범인인도전 절차의 핵심을 이룸. |
| 청색수배서               | Blue Notice :<br>Form 2          | (1) 국제정보조회수배서<br>(2)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 목적                                                                                                                                                                             |
| 녹색수배서               | Green Notice :<br>Form 3         | (1) 상습국제범죄자 수배서<br>(2)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발행함.<br>(3) 전과의 정도·범죄종류·국제범죄조직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행함.                                                                           |
| 황색수배서               | Yellow Notice :<br>Form 4        | (1) 가출인 수배서<br>(2) 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신원파악 목적                                                                                                                                                                       |
| 흑색수배서               | Black Notice :<br>Form 5         | (1) 변사자(사망자) 수배서<br>(2)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br>(3) 시체의 사진과 지문·치아상태·문신 등 신체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
| 장물수배서               | Stolen Property<br>Notice        | (1)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 수배서<br>(2)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행됨.                                                                                                                                                    |
| 범죄수법수배서<br>(자주색수배서) | Modus Operandi,<br>Purple Notice |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회원국에 배포, 범죄예방 및 수사·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                                                                                                                                                                    |
| 보안경고<br>(오렌지수배서)    | Security Alert,<br>Orange Notice | 폭발물·테러범(위협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
| INTERPOL-UN<br>수배서  | INTERPOL-UN<br>Notice            |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함.                                                                                                                                                                  |

**2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23번)

-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았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 검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는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 해설 ①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호  
 ②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제1항  
 ③ (옳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2항  
 ④ (틀림)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7일(x))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제3항).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 제4조(신고의무 등)

-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

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24 다음 중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24번)

- ① 금융기관의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는 집단으로 위력을 보인 경우이므로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 ③ 대테러활동은 개인적 불법행위의 관련된 것으로 경비경찰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자연적 돌발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정답 ④

- 해설
- ① (틀림) 금융기관의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는 경비경찰의 대상이 아니고 **범죄예방활동**으로 **생활안전경찰**의 대상이다.
  - ② (틀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개인적 법익 침해**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경비경찰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경찰**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틀림) 대테러활동은 개인적·단체적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 ④ (옳음) **자연적 돌발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경비경찰활동 중 **재난경비**의 대상이다.

**25 경비경찰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25번)

- |                                                   |
|---------------------------------------------------|
| ㉠ 지시는 한 사람에게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 ㉡ 의사결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위해 결정과정을 단일화 해야 한다.         |
| ㉢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                       |
| ㉣ 주민의 협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
| ㉤ 치안협력성의 원칙은 업무수행의 신속성과는 관련이 적다.                  |
| ㉥ 부대단위로 활동을 할 때에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정답 ③

- 해설
- ③ “㉠, ㉢, ㉥” 3개는 옳고, “㉡, ㉣, ㉤”는 틀림.
- ㉠ (옳음) 지시는 한 사람에게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령과 복종의 체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체계통일성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 ㉡ (틀림) 지휘관단일의 원칙이란 의사결정은 다수에 의하여 신중히 검토된 후에 가장 효과적·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그 집행에 있어서는 한사람의 지휘관에 의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집행의 단일성**)을 말하며, **의사결정 과정 단일의 원칙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휘관 단일성이란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지휘관이란 의미와 ㉢하급조직원은 하나의 상급조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 (틀림) “임무를 중복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것은 **체계통일성의 원칙에 반한다**.
- ㉣ (옳음) “주민의 협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치안협력성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 ㉤ (옳음) 긴급하고 신속한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 폭동의 진압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지휘관의 신속한 결단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지휘관단일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㉔ (틀림) 부대단위활동의 원칙상 부대활동시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한다.

정리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리(원칙)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상의 원칙

|                   |     |                                                                                                                                                                                                                                                                                       |
|-------------------|-----|---------------------------------------------------------------------------------------------------------------------------------------------------------------------------------------------------------------------------------------------------------------------------------------|
| 부대단위<br>활동의<br>원칙 | 의 의 | 경비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개인적 활동이 아닌 부대단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                                                                                                                                                                                                                                           |
|                   | 특 징 | (1) 부대에는 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과 지휘를 받는 직원 및 대원이 반드시 있어야함<br>(2) 부대에는 하급 부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지휘권과 장비가 편성되며 임무수행을 위한 보급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br>(3) 부대의 관리와 임무의 수행을 위한 최종결정은 지휘관만이 할 수 있고, 하명에 의하여서만 임무가 이루어짐<br>(4) 경비경찰의 업무는 어떠한 경비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임무가 이루어짐 ↔ 경비경찰 업무는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업무(×) |
| 지휘관<br>단일의<br>원칙  | 의 의 | 지휘관이 한명으로 통일된 지휘를 하여야 한다는 원리                                                                                                                                                                                                                                                          |
|                   | 필요성 | 경비경찰업무가 예측불가능하고 긴급성과 신속성을 요한다는 점 → 성공적인 조직운영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                                                                                                                                                                                                                              |
|                   | 내 용 | (1) 위원회나 또는 집단지휘체제를 구성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br>(2) 의사결정은 다수에 의하여 신중히 검토된 후에 가장 효과적·합리적으로 결정하되 그 집행에 있어서는 한사람의 지휘관에 의하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집행의 단일성) ↔ 의사결정과정 단일의 원칙(×)<br>(3) 지휘관 단일성 =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지휘관이란 의미 + 하급조직원은 하나의 상급조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                                      |
| 체계<br>통일성의<br>원칙  |     | 조직의 정점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계선을 통하여 상하 계급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                                                                                                                                                                                        |
| 치안<br>협력성의<br>원칙  | 의 의 | 경비경찰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를 해줄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과 국민이 결합해야 한다는 원칙                                                                                                                                                                                               |
|                   | 유의점 |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이어야 하고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됨                                                                                                                                                                                                                                           |

## 2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26번)

- ① CPTED는 물리적 환경과 관련해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 ② 기본원리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강화, 유지관리이다.
- ③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영역성의 강화원리이다.
- ④ 뉴먼(Oscar Newman)은 '방어공간'을 통해 주택건축과정에서 범죄예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활동성의 강화**(↔ **영역성의 강화(×)**)원리이다.

정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법(CPTED)**

|    |                                                                                                                                                                                                                                                                 |
|----|-----------------------------------------------------------------------------------------------------------------------------------------------------------------------------------------------------------------------------------------------------------------|
| 개념 | (1)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의 상황적 범죄예방론 중 생태학적이론에 기인한 이론<br>(2) (범죄인 교화보다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환경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전략(=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 비판 | (1) 전이효과 : 범죄의 기회를 줄여도 실제적으로는 범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범죄는 줄지 않음<br>(2) 국가통제사회 기능성 : 범죄의 기회를 줄이기 위해 국가에 의한 사회통제의 정도가 심화되고, 요새화된 사회를 만들어 인권이나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 유래 | 방어 공간<br>(1) 제이콥스(Jacobs) : 주택의 고층화가 범죄유발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별, 도로상의 눈을 고려한 건물방향, 도로가 빈번하게 이용되도록 설계할 것을 주장함.                                                                                                                                            |

|            |                   |                                                                                                                                                                                                                                             |
|------------|-------------------|---------------------------------------------------------------------------------------------------------------------------------------------------------------------------------------------------------------------------------------------|
|            |                   | (2) 오스카 뉴먼(Oscar Nemman, 1972, 저서 '텅어공간' )<br>① 공동주택이 범죄의 온상이라고 봄.<br>② 공동주택의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성을 입증함.<br>③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CPTED)이론의 성립에 영향을 줌.<br>④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태만히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봄. |
|            | 제프리               | 1971년 최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 기본 원리 (전략) | 자연적 감시            | (1) 보행자 얼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등의 밝기를 높이는 것 같은 가시권 확보를 통해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Natural Surveillance)<br>(2)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br>(3) 예 외진 골목길에 가로등 설치하기                                                          |
|            | 자연적 접근통제          | (1)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이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Natural Access Control)<br>(2) 예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통행로의 설치 :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 설치 등                                                        |
|            | 영역성의 강화           | (1) 영역성(Territoriality)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br>(2) 예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을 위해 울타라·담장 등을 설치하기                                                        |
|            | 활동성의 증대 (활동의 활성화) | (1) 활동성(Activity Support)의 증대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br>(2) 예 마을 입구에 정자 등을 설치하기,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 증대                                                      |
|            | 유지관리              | (1) 최초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Maintenance and Management)<br>(2) 예 시설물 파손 즉시 개 보수, 조명·조경의 관리·유지, 청결 유지                                                                              |

## 27 다음 판례 내용 가운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은?

(20130223경간부경철학개론-27번)

- ①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된 경우(김진조 사건)
- ② 상설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있지 않는데도 검문소 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 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 ③ 전경들이 서충련의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 단순한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와 무관한 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경우
- ④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정답 ④

해설

- ① (국정) 무장공비색출체포를 위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출소 소장, 순경 및 육군장교 수명 등이 파출소에서 합동대기하고 있던중 그로부터 불과 60-70미터 거리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주민들이 무장간첩과 격투하던 주민중 1인이 무장간첩의 발사권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면 위 군경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와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71. 4. 6, 71다124).
- ② (국정) 상설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지 않는데도 검문소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법 1992.8.25. 선고 91가합31268 제8민사부판결 : 확정)이다.
- ③ (국정) 전경들이 서충련의 불법시위 해산 과정에서, 단순히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무관자들을 강제연행한 데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43551 판결)이다.  
다수인이 모여 불법,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 그 주위에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다수 모여 있어, 그 집



회의 해산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진 경우에는 집회 참가자 여부를 정확히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집회 및 시위의 해산, 그에 관련된 현행범의 체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기타 공무원으로서는 그 체포 시점의 구체적 상황하에서 피체포자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체포를 피해 도주하거나 외모로 보아 집회참가의 흔적이 확연하여 집회 참가자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결과적으로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오인하여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김모, 강모은 사건 당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가방을 들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연세대학교 안에 진입해 있던 전경들의 불심검문을 받아 연행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와 위 체포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보아 도저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박모, 김모, 권모, 정모, 신모, 손모, 김모, 김모, 김모, 이모는 그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사사로운 일로 교내에 있던 연세대학교 학생들로서 각 체포 당시 원고 박모, 권모, 정모, 신모, 손모, 김모은 진압 전경이 1차 진입한 후 도서관 밖으로 철수하여 그 앞에서 대기중인 상태에서 도서관에 공부를 하다가 나온 다른 학생들과 같이 대기중이던 전경들에 향하여 도서관 진입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이었고, 원고 김모, 김모, 김모, 이모는 다른 학생들이 전경들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는 순간 도서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집으로 귀가중이었는데, 도서관 앞에 도열해 있던 전경들이 항의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면서, 학생들을 체포, 연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으로 2차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박모, 김모, 정모, 신모, 김모, 김모, 김모, 이모는 도서관 앞에서, 원고 권모, 손모은 근처에 위치한 이과대 및 법대 건물 쪽으로 피하다가 각 추적하는 전경들에게 체포되었던 것이므로, 위 원고 박모 등을 체포, 연행한 전경들로서는 그들이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원고 박모, 권모, 정모, 신모, 손모, 김모이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사실을 들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④ (부정)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이다.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28 다음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중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28번)

- ①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 - 5년
- ②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3년
- ③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2년
- ④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때 - 2년

정답 ②

해설 ② (틀림)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2년{↔ 3년(×)}

정리 응시기간 제한(=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 제한기간 | 제한사유                                                                                                                                                                                                                                                                      |
|------|---------------------------------------------------------------------------------------------------------------------------------------------------------------------------------------------------------------------------------------------------------------------------|
| 5년   | (1) ① 무면허운전(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 부터 5년<br>(2) ① 음주운전, ② 과로·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 ③ 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취소된 날로 부터 5년 |
| 4년   | 무면허운전·음주운전·과로·질병 또는 약물복용운전·공동위험행위의 금지에 위반한 운전 외의 사유(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    |                                                                                                                                                                                                                                                                                                                                                                                                                                                                                                                                                                                                                                                                                                                         |
|----|-------------------------------------------------------------------------------------------------------------------------------------------------------------------------------------------------------------------------------------------------------------------------------------------------------------------------------------------------------------------------------------------------------------------------------------------------------------------------------------------------------------------------------------------------------------------------------------------------------------------------------------------------------------------------------------------------------------------------|
|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 3년 | (1) 음주운전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br>(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무면허인 경우를 전제함)<br>(3)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 2년 | 다음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2년<br>(1) ① 무면허운전 또는 ②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위반한 날부터 2년<br>(↔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br>(2) ① 운전면허 결정사유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② 거짓이나(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③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8호) → 취소된 날부터 2년<br>(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3호) → 취소된 날부터 2년<br>(4)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12호)<br>(5)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br>(6)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 1년 |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1년<br>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한 운전 → 위반한 날로부터 1년<br>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br>(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br>예 ① 2회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br>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제외)<br>③ 벌점초과<br>④ 혈중알콜농도 0.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br>(3)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1년<br>(4)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취소된 날부터 1년<br>[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br>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br>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br>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br>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br>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br>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 6월 | (1)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함)의 선고를 받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br>① 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 중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금지에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위반한 날로부터 6월<br>②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금지에 위반하여 취소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취소된 날로부터 6월<br>(2) 2년 ~ 5년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br>(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면허가 있는 경우를 전제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6월<br>[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br>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

|              |                                                                                                                                 |
|--------------|---------------------------------------------------------------------------------------------------------------------------------|
|              | ②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br>③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br>④ 약취·유인 또는 감금<br>⑤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함)<br>⑥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 (1)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br>(2)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정지처분 기간 중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 교통안전 교육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

## 29 다음 중 도로교통법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틀린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29번)

-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제1호

② (틀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x))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항 제2호).

③ (옳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제3호

④ (옳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정리

음주운전자 단속

|         |                       |
|---------|-----------------------|
| 술취한 상태의 | (1)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
|---------|-----------------------|

|                    |                                                                                                                                                                                                                                                                                                                                                                                                 |                       |                          |
|--------------------|-------------------------------------------------------------------------------------------------------------------------------------------------------------------------------------------------------------------------------------------------------------------------------------------------------------------------------------------------------------------------------------------------|-----------------------|--------------------------|
| 기준                 | (2) 혈액 1ml에 알코올 0.5mg 이상 또는 호흡 1L에 대하여 알코올을 0.25mg 이상을 의미함.                                                                                                                                                                                                                                                                                                                                     |                       |                          |
| 음주측정<br>요건         |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br>(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                          |
| 운전자의<br>수인의무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거부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함.                                                                                                                                                                                                                                                                                                                                                            |                       |                          |
| 운전이<br>금지되는<br>자동차 |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은 자동차등(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건설기계 등)임<br>(2) 자전거(경주용 자전거 포함), 경운기, 우마차, 트랙터 등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아님(이유 : “자동차등”에<br>해당하지 않음).( $\leftrightarrow$ 군용차량은 음주운전 단속대상임)<br>(3) 모든 건설기계는 음주운전이 금지 됨 $\leftrightarrow$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함( $\times$ )                                                                                                          |                       |                          |
| 도로 외의<br>곳에서<br>처벌 | (1)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것에서도 음주운전(법 제44조), 약물운전(법 제45조), 뺑소니 운<br>전(법 제54조 제1항) 및 해당 처벌조항(148조, 제148조의2)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이 가능함.<br>(2)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불가능함.<br>(3)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법 제148조의2) :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함.                                                                                                                                                             |                       |                          |
|                    |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                    | 1회                                                                                                                                                                                                                                                                                                                                                                                              | 0.2% 이상               | 1~3년 징역/500만원~1천만원 벌금    |
|                    |                                                                                                                                                                                                                                                                                                                                                                                                 | 0.1~0.2%              | 6개월~1년 징역/300만원~500만원 벌금 |
|                    |                                                                                                                                                                                                                                                                                                                                                                                                 | 0.05~0.1%             | 6개월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                    | 측정 거부                                                                                                                                                                                                                                                                                                                                                                                           | 1~3년 징역/500만원~1천만원 벌금 |                          |
|                    | 2회 위반                                                                                                                                                                                                                                                                                                                                                                                           | 1회 위반시와 동일            |                          |
|                    | 3회 이상 위반                                                                                                                                                                                                                                                                                                                                                                                        | 1~3년 징역/500만원~1천만원 벌금 |                          |
| 단속요령               | (1)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도주하는 때에는 추적 검거하여 의법조치<br>(2) 음주갑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된 경우 추돌사고 등 위험이 없는 도로변으로 안전하게 이동<br>(3) 음주측정기로 경찰관이 직접 음주측정<br>(4) 음주정도 측정결과 음주운전자로 확인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대기시키지 말고 즉시 경찰서로 동행<br>하여 의법조치<br>(5) 측정 불응시는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처벌내용 고지                                                                                                                                   |                       |                          |
|                    | (1) 피단속자의 이야기를 성실껏 청취하고, 친근감있는 대화유도<br>(2) 현행범체포시 반드시 미란다원칙 고지(여성운전자 동행시 언행에 유의)<br>(3) 피단속자 재운전 금지조치<br>(4) 차량검문시 급발진 등 도주우려에 대비하여 단속자 신변보호<br>(5) 교통사고시 관련운전자 음주측정<br>(6) 음주갑지기로만 확인하지 말고 눈동자, 냄새 등을 종합적 고찰<br>(7) 음주측정용 불대는 매회 측정시마다 교체<br>(8) 채혈시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 동의서 작성 후 의사가 채혈<br>(9)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전 측정결과,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재확인<br>(10) 음주측정 전 피단속자가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 $\leftarrow$ 과대측정 방지책 |                       |                          |
|                    | (1)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 수치를<br>적용하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추산시 시간당 감소치를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h를 적용하여<br>사건 처리함이 바람직함(대판 2001. 8. 21, 2001도2823).<br>(2)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br>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                          |
|                    | (1) 음주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혈액채취를 요구한다면 혈액을 채취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하게 되는데 여기<br>서 상당한 시간이란 약 30분으로 봄<br>(2) 채혈하여 감정 의뢰한 경우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결과에 우선함                                                                                                                                                                                                                                                                |                       |                          |
|                    | (1)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외에 운전자의 정황을 상세히 작성 첨부하여 공소유지 등 수사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br>(2) 음주측정 결과 단속수치(0.0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의 조치요령<br>① 채혈감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br>②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rightarrow$ 음주측정기는 소수점 세자리까지 표시되므로 소수점 세자리까지 음주운전자 적발<br>보고서에 기재<br>③ 미란다 원칙의 고지 등 적정절차 준수하며 즉시 경찰서로 동행, 의법조치 함<br>(3) 사회 저명인사 적발시나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                       |                          |
|                    |                                                                                                                                                                                                                                                                                                                                                                                                 |                       |                          |

|                       |                                                                                                                                                                                                                                                                                |  |
|-----------------------|--------------------------------------------------------------------------------------------------------------------------------------------------------------------------------------------------------------------------------------------------------------------------------|--|
|                       | <p>(4) 주취운전자정향진술보고서 작성시 기재사항 : ㉠측정횟수, ㉡구강제 사용종류, ㉢운전자의 혈색, ㉣운전자의 성명, ㉤주인등록번호, ㉥측정일자장소, ㉦20분 경과여부, ㉧음주경위, ㉨음주운전 거리, ㉩적발당시 정향 등(↔ 위드마크 적 용여부(×))을 기재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의한 별지 제84호 서식).</p>                                                                                  |  |
| <p>측정거부시<br/>조치요령</p> | <p>(1)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후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p> <p>(2) 측정거부로 주취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측정하여서는 안 됨</p> <p>(3) 측정거부의 경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채혈하지 않아야 함 ↔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채혈이 가능함</p> |  |

## 측정거부시 조치요령

- (1)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후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
- (2) 측정거부로 주취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측정하여서는 안 됨
- (3) 측정거부의 경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채혈하지 않아야 함 ↔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채혈이 가능함

(2) 측정거부로 주취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측정하여서는 안 됨

(3) 측정기구의 경우 주측온전자적발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채혈하지 않িয়া 함 ↔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채혈이 가능함

**30**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0223경간부경철학개론-30번)

-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㉔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② “㉠, ㉡” 2개는 틀리고, “㉢, ㉣” 2개는 옳음.

㉠ (틀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항).

㉠ (틀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 3년(x)}으로 한다{「도로교통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2항}.

㉔ (올음) 「도로교통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3항

② (옳음) 「도로교통법」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4항

조문 「도로교통법」

##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31번)

- ① 중요사항정보는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이다.
- ②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계획 등을 파악하여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판단서를 작성하여 경비·수사 등 관련 기능에 전파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판단서를 집회시위대책 또는 정보대책이라고 한다.
- ③ 정책정보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보고로 '예방적 상황보고'라

② 신고된 집회계획 또는 정보관들이 입수한 미신고 집회 개최계획 등을 파악하여 이 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중요 집회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판단서를 작성하여 경비·수사 등 관련 기능에 전파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판단서를 집회시위대책 또는 정보대책이라고 한다.

③ 정책정보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보고로 '예방적 상황보고'라



고 볼 수 있다.

- ④ 정보보고서의 작성은 일반적인 보고서의 작성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어떠한 판단이나 경찰 조치를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답 ④

해설 ④ (틀림) 정보보고서의 작성은 일반적인 보고서의 작성과 큰 차이는 없으나 어떠한 판단이나 경찰 조치를 나타내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경찰정보론, 경찰대학).

## 32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32번)

- ① 주한미군 당국은 SOFA 대상자에 대해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관해 주한미군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② 1966년 7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체결되기 전에는 1950년 7월 12일 대전협정과 1952년 5월 24일 마이어(Meyer)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 ③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NATO에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여행 중인 미군, 주한 미군 초청계약자 등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 ④ 2001년 1월 18일 제2차 개정시에는 주요 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가 재판 후에서 기소 후로 앞당겨졌으며, 환경조항, 민사소송절차 등이 신설되었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NATO에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여행 중인 미군은 적용대상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며, 주한 미군 초청계약자는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리 SOFA 적용대상자

|     |                                                                                                                                                                                                                                                    |
|-----|----------------------------------------------------------------------------------------------------------------------------------------------------------------------------------------------------------------------------------------------------|
| 미 군 | (1)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에 속하는 <b>현역군인</b> 을 의미함.<br>↔ 주한미군 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모든 군인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을 적용받으나 사적인 여행을 하는 미군이나 공적인 여행이더라도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음.                                                                                  |
|     | (2) <b>주한미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b> 과 <b>주한미군사교문단원</b> , <b>주한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과 군인</b> 은 대상에서 제외 됨. → 이들은 준외교특권을 향유(『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함.                                                                                                            |
|     | (3) <b>카투사(KATUSA)</b> 의 지휘감독권은 미군에 있지만 인사행정권은 한국군에 있어 미군으로 간주되지 않음 → 대한민국군인으로 간주되어 SOFA가 적용되지 않음.                                                                                                                                                 |
|     | (4) 한미양국의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인 경우 : 주한 미군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자라면 본 협정의 적용대상자임.                                                                                                                                                                             |
|     | (5) 대한민국에 여행중인 미군<br>① <b>개인적으로</b> 한국에 여행중인 미군은 본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br>② 한국에 <b>공무로</b> 여행중인 미군 : 나토의 규정 등을 근거로 모두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주한미군지위협정으로서의 본질을 감안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사령부의 지휘·통제의 대상이 되는 자만을 제한적으로 적용대상인다는 견해가 타당함.<br>→ NATO에 근무 중 한국에 여행중인 미군(×). |
| 군 속 | (1)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군대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의미 → 한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와 초청계약자는 제외                                                                                                                                                 |
|     | (2) 한·미 양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인 군속의 경우에도 그가 주한미군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자이면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     | (3) 주한미군 기술대표(Technical Representative)는 복잡한 군사장비의 정비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나 주한미군이 나 한국에서 채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미군이나 한국요원의 특별강사 또는 고문인 자를 말하며 주한미군의 군속으로 취급됨.                                                                                                  |
| 가 족 | (1) 미군군속의 배우자 : 주한미군 또는 군속과 혼인한 사실만으로 즉시 미국 국적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미군과 혼인한 한 국인이더라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b>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만</b> 본 협정의 적용대상이 됨.                                                                                                                       |
|     | (2) 미군군속의 <b>21세 미만</b> 의 자녀                                                                                                                                                                                                                       |
|     | (3) 미군군속의 <b>부모</b> 및 <b>21세 이상의 자녀</b> 또는 <b>친척</b> 으로 <b>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b> 을 미군·미군속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                                                                                                                                                   |

|        |                                                                                                                                                                                       |
|--------|---------------------------------------------------------------------------------------------------------------------------------------------------------------------------------------|
|        | ※ 현재 대한민국에 있지 아니하는 미군·군속의 가족 : 미군·군속인 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주한 미군 사령부가 그의 생활 본거지를 대한민국으로 지정한 경우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의 적용대상이 됨.<br>※ 기타 친척의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생계비 규정 또한 산출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초청 계약자 | 미합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미합중국 내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의 고용원 및 그의 가족으로서 주한미군 등의 군대를 위하여 특정한 조건하에 미합중국정부의 지령에 의한 수의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자 ⇨ 법인, 고용인 및 그 가족을 포함                                            |

33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생산자의 장애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2013022경관부경찰학개론-33번)

- ㉠ 정보분석관의 객관적 분석의 결여와 더불어 정보기관의 집단적 편견도 정보실패의 주요원인이다.

㉡ 정책결정자의 소요요청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정보속성상 정보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인을 다루고 있어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 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추어 제 시간에 정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완벽한 보고서를 만든다고 시간변수를 간과한다면 좋은 정보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 정답 ①

해설 ① 모두 정보생산자의 장애요인에 해당함.

㉠ 정보생산자의 장애요인 중 **편향적 분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 정보생산자의 장애요인 중 **적합성의 문제**에 해당한다.

㉢ 정보생산자의 장애요인 중 **판단의 불명확성**에 해당한다.

㉤ 정보생산자의 장애요인 중 **적시성의 문제**에 해당한다.

정리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

|                |                                                                                                                                                                                                                                                                                                                                                                                                                                                                                                                                                                                                                                                                                                              |
|----------------|--------------------------------------------------------------------------------------------------------------------------------------------------------------------------------------------------------------------------------------------------------------------------------------------------------------------------------------------------------------------------------------------------------------------------------------------------------------------------------------------------------------------------------------------------------------------------------------------------------------------------------------------------------------------------------------------------------------|
|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 | (1) <b>정책결정자의 시간적 제약성</b><br>고위정책결정자들은 정책결정 이외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정보생산자가 정책결정자의 일정에 쫓겨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br>(2) <b>정책결정자의 선호정보</b><br>정책결정자는 이미 선호정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지지하는 정보판단을 기대함 →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과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 이를 편향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br>(3) <b>정책결정자의 자존심</b><br>① 정책결정자가 가지게 되는 자기분야에서 최고라는 자신감 등으로 인해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견해를 반대하는 정보들을 비실질적이고 잘 알지 못한다에 따른 것이며 가치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함.<br>② 정보의 잦은 개입을 기분 나빠하거나 정책의 해악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도 비전문가의 의견 정도로 무시해 버리는 경향도 있음.<br>(4) <b>정보에 대한 과도한 기대</b><br>정책결정자들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그것들에 대한 비밀스런 대답과 지침을 주기를 바라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불신으로 이어지게 됨<br>(5) <b>판단정보의 소외</b><br>정보사용자는 장기적인 판단정보보다는 현안정보를 요구함 → 현용정보를 판단정보보다 높게 평가함 |
|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 | (1) <b>다른 정보와의 경쟁</b><br>신문·방송·인터넷·사설정보지(기업 정보부서, 증권가 등)·각종 논문 및 서적 등 깊고 넓은 정보를 정보생산자의 한정된 능력으로 다루기는 힘겨움.<br>(2) <b>편향적 분석의 문제</b><br>정보분석관들의 편향적 분석은 교육배경·정치적 신념·가치관 등에 따라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나타나고, 정보분석관 개인·정보기관 또는 특정집단의 불순한 목적이 개입된 의도된 정보보고·정보왜곡은 정보의 신뢰성까지 의심받게 하며, 정보기관의 집단적 편견도 정보실패의 주요 원인임.<br>(3) <b>적시성의 문제</b><br>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춰 적시에 정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완벽한 보고서를 만든다고 시간변수를 간과한다면 좋은 정보보고서를 만들지 못함.                                                                                                                                                                                                                                                                                                     |

(4) 적합성의 문제 : 정책결정자의 소요요청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5) 판단의 불명확성

정책결정자들은 정보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기를 기대하나, 정보의 속성상 모호하고 불명확한 시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정보기관 간의 흥정을 통해 정보를 왜곡시키기도 하며, 각주를 통해 정보판단보고서의 초점을 흐려기도 함.

### 3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보안경찰의 직무범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34번)

- ㉠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 ㉡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 ㉢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 ㉣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 ㉦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정답 ①

해설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보안경찰의 직무범위는 "㉢, ㉤, ㉥" 3개이다.

조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5조(보안국)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정리 보안경찰의 의의와 활동근거

|              |                                                                                                                                                                                                                                                                 |
|--------------|-----------------------------------------------------------------------------------------------------------------------------------------------------------------------------------------------------------------------------------------------------------------|
| 보안경찰의 의의     |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좌익운동 등 우리 내부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거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공산주의에 의해 비롯되는 위해 등을 제거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                                                                                                                                                                      |
| 국가안전보장과 보안경찰 |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찰업무는 보안경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외사경찰과 정보경찰이 함께 담당함<br>(2) 보안경찰은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동일                                                                                                                                               |
| 보안경찰의 임무     | (1)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지도, 조정업무<br>(2)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br>(3)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br>(4) 안보위해문건(반국가적 불온유인물 등) 수집 및 분석<br>(5)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br>(6) 남북교류 관련 보안경찰업무<br>(7)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br>(8) 북한 이탈주민 관리 및 경호안전대책업무<br>(9) 국내선 공항, 항만 보안활동<br>(10) 긴급 신원조사 |



③ ㉠, ㉡

④ ㉢, ㉣

정답 ②

해설 ② “㉠, ㉡” 2개는 틀리고, “㉢, ㉣, ㉣” 3개는 옳음.

㉠ (옳음) 『보안관찰법』 제1조 (목적)

㉡ (틀림)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x))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보안관찰법』 제4조(보안관찰처분) 제2항).

㉢ (옳음)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 (틀림) 『보안관찰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5년(x))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 (옳음) 『보안관찰법』 제14조(결정) 제1항

조문 『보안관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관찰처분)**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4조(결정)**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7 다음 중 지명수배규칙(경찰청 예규)상의 지명통보 대상으로서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130223경간부경철학개론-37번)

① 법정형이 장기3년 미만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된 자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기록상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③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은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지명수배규칙』 제4조(지명수배·통보대상) 제2호 가목

② (틀림)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가 지명통보 대상에 해당한다(『지명수배규칙』 제4조(지명수배·통보대상) 제2호 나목).

③ (옳음) 『지명수배규칙』 제4조(지명수배·통보대상) 제2호 다목



④ (옳음) 「지명수배규칙」 제4조(지명수배·통보대상) 제2호 라목

조문 「지명수배규칙」

**제4조(지명수배·통보대상)** 「범죄수사규칙」 제173조제1항 및 제2항과 「범죄수사규칙」 제17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또는 등록기준지)를 파악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 대상

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4조제2호나목의 경우제외)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 포함)

나.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2. 지명통보 대상

가. 법정형이 장기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된 자

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기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다. 제4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38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할 때 공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38번)

-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정답 ④

해설 ① (공조제한사항)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공조의 제한) 제1호

② (공조제한사항)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공조의 제한) 제2호

③ (공조제한사항)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공조의 제한) 제3호

조문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2]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39번)



40 경찰홍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0223경간부경찰학개론-40번)

- ①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란 포돌이처럼 상징물을 개발, 전파하는 등 조직이미지를 고양하여 높아진 주민 지지도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형사사법 환경하의 협력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을 말한다.
- ②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Sir Robert Mark이다.
- ③ 적극적 홍보전략으로는 대중매체 이용 언론접촉 장려, 홍보와 타기능 연계,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원칙이 있다.
- ④ 협의의 홍보란 유인물, 팜플렛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이다.

정답 ③  
해설 ③ (틀림)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원칙”은 소극적 홍보전략에 해당하고, “공개주의와 비밀최소화원칙”은 적극적 홍보전략에 해당한다.

정리 경찰홍보전략

|             |                |                                                                                                                                                                                                                                    |
|-------------|----------------|------------------------------------------------------------------------------------------------------------------------------------------------------------------------------------------------------------------------------------|
| 소극적<br>홍보전략 | 공보실과 기자실       | (1) 공보실 :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단위에 공보실을 두고 언론의 보도내용을 발췌하여 지휘관과 각 기관에 배포 → 공보라는 용어는 국가기관이 알리는 사항이라는 위압적인 의미를 내재<br>(2) 기자실 : 출입기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찰에 유리한 보도를 하게하고 부정적인 기사거리가 발생하였을 때 축소 내지 삭제요청이 용이 → 소극적이고 편의주의적 발상의 산물로서, 적극적인 홍보전략의 장애요인 |
|             |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 원칙 |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전통에 따라 업무에서도 비밀주의가 만연 → 홍보의 본래의 목적이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다는 점에서 대언론 자세의 전환이 필요                                                                                                                                             |
|             | 언론접촉 규제        | 언론접촉이 상사의 허락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시 익명이나 얼굴이 가려져 보도되는 사례가 일상화 → 정식 홍보기능을 통한 언론관계보다는 경찰관 개인이 기자 개인에게 제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어 보도되어서는 안될 내용이 유출되고 사실의 왜곡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             | 홍보기능의 고립       | 경찰의 홍보기능은 수사·생활안전·교통 등 타 기능과 분리되어 경찰관련 정보를 종합하지 못함으로써 언론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잡지 못하고 기자실 운영을 통한 친분관계의 유지수준(홍보와 타기능의 분리) → 사건·사고 발생시 기자들은 업무담당자를 찾아 정보를 입수하려 하기 때문에 실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
| 적극적<br>홍보전략 | 대중매체의 이용       | 영미 등 선진 경찰에서는 경찰을 필요로 하는 대중매체의 속성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홍보전략을 구사 → 대중매체를 잘 아는 전직 언론인이나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채용하여 홍보업무를 수행                                                                                                                   |
|             | 공개주의와 비밀최소화 원칙 | 필요최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경찰조직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적극적 홍보전략 → 우리와 비슷한 안보요소를 안고 있는 영국의 경찰청도 공개정책을 천명                                                                                                               |
|             | 언론접촉 장려        | 경찰교육과정에서 언론대응역량을 갖추게 한 후 모든 경찰관들에게 특정시간(내부비라경호 등)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자유로이 언론과 접촉하도록 허용 → 전 경찰관의 홍보요원화                                                                                                                                     |
|             | 총체적 홍보전략       | 홍보실과 타 기능간에 네트워크연결을 통하여 홍보실에서 공개가능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언론사의 문의에 답하고 기사거리를 제공 → 경찰기관의 언론홍보실이 언론관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기자들이 실무담당자를 직접 찾아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극소화                                                                                         |

정리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             |                                                                                               |
|-------------|-----------------------------------------------------------------------------------------------|
| Sir R. Mark |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                                            |
| Crandon     |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                                                |
| Ericson     |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문제 및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적 기구로서,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고 주장 |

정리 경찰홍보의 유형

|     |     |                                                             |
|-----|-----|-------------------------------------------------------------|
| 협의의 | 의 의 | 유인물·팜플렛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좋은 점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PR : Public |
|-----|-----|-------------------------------------------------------------|

|              |     |                                                                                                                                                                            |
|--------------|-----|----------------------------------------------------------------------------------------------------------------------------------------------------------------------------|
| 홍보<br>(공공관계) |     | Relations)                                                                                                                                                                 |
|              | 중요성 | (1) 국민의 지자·신뢰·동의를 얻기 위해 필요<br>(2) 공무원의 사기 제고를 위해 필요<br>(3) 조직의 입장을 알리고,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기 위해 필요<br>(4) 국민의 가치관·행태 및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                                          |
| 지역공동체<br>관계  | 의 의 | 지역사회 내의 각종 기관(미디어·관공서·교육기관·병원 등), 단체 및 주민들과 유기적인 연락 및 협조체제를 구축·유지하여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을 하는 동시에 경찰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종합적인 지역사회 홍보체계(CR : Community Relations) |
|              | 수 단 | 지역공동체관계(CR)의 수단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지역경찰관의 활동                                                                                                                                     |
| 언론관계         | 의 의 | 신문·잡지·TV나 라디오의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기능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대개 사건·사고에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홍보활동(PR : Press Relations)                                                                       |
|              | 목 적 | 부정적인 보도를 막고 긍정적인 보도를 늘리는 것이 주목적                                                                                                                                            |
| 대중매체<br>관계   | 의 의 | 언론관계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발전된 보다 종합적인 홍보활동을 신문·방송 및 영상물 등 각종 대중매체 제작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유지하여 대중매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활동(MR : Media Relations)                        |
|              | 방 법 | 대중매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적극적 홍보활동으로서 경찰관보다는 전직 언론인·문화산업 종사자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                                                                                |
| 기업식<br>홍보    | 의 의 | 일반기업이 행하는 것과 같이 친근한 상징물(예 포돌아·포순이)을 개발하여 전파하는 등 조직 이미지를 고양하여 이를 통해 높아진 주민지지도를 바탕으로 예산확대와 경찰활동에 대한 협력확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                                      |
|              | 내 용 | (1) 소비자의 관점 : 소비자주권 시대를 맞아 경찰업무의 서비스 개념, 즉 주민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에서 발달한 홍보기법<br>(2) 적극적 홍보활동 : 시설·경비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더이상 치안활동의 독점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를 중심으로 발달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